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運營 및 實費辦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제출년월일 : 1992. 7.
제안자 :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4월 28일 한기태의원외 6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1992년 6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92. 7.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韓箕泰 議員)

가. 제안이유

- 현행조례상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중 “영등포구에 거주 하여야 하는 자격요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자격) 제1항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로 개정
- 제9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각 1호에 해당되었을때와 의원 이외의 자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한기태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된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 1항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조례 제2조(자격) 1항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아닌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으로 유능한 검사위원의 선택의 폭이 좁아 효율적인 검사에 미흡한 면이 있어 거주지를 서울특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조례 제9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자구정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셋째, 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조례 제2조(자격)가 개정되므로 인해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제1호 규정이 다소 미미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 각호 1에 해당되었을 때”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실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재적의원 11명

- 출석 10명
- 찬성 10명
- 반대 없음)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運營 및 實費辦償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8
----------	----

발의년월일 : 1992년 6월 24일
발의자 : 한기태의원외6인

1. 제안이유

현행조례상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중 “영등포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 요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2조(자격) 제1항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로 개정
- 제9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각호1에 해당 되었을 때와 의원 이외의 자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4. 개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 및 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자격) 제1항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9 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각호1에 해당 되었을 때와 의원 이외의 자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격)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제9조(감사위원의 해촉)</p> <p>① (생략)</p> <p>1. <u>영등포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된 때</u></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자격) ①.....서 울특별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제9조(검사위원의 해촉)</p> <p>① (현행과 같음)</p> <p>1. <u>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각호1에 해당되었을때와 의원 이외의 자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검사업무에 수행할 수 없게된 때</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